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397 제출연월일: 2024. 8. 3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 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 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제20조의2제1항"을 "제20조의2제1항·제2항"으로 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"(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)"를 "(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""환급세액""을 ""가정용부탄 환급세액""으로하며, 같은 항 계산식 중 "환급세액"을 "가정용부탄 환급세액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"을 "제1항 또는 제2항"으로, "가정용부탄"을 "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"으로, "환급세액"을 "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환급세액"이라 한다)"으로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제1항"을 각각 "제1항 또는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"로 한다.

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(연료 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)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 (이하 이 조에서 "수소제조용부탄"이라 한다)을 판매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(이 하 이 조에서 "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"이라 한다)을 환급하거나,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

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=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× (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세액 - 같은 호 마목의 세액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총괄납부) ① 제3조제2	제10조의2(총괄납부) ①
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	
조제1호다목, 제14조제4항 및	
<u>제20조의2제1항</u> 에 따라 개별소	<u>제20조의2제1항ㆍ제2항</u>
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·반출한	
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	
나 환급받을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가정용부탄에 대한 개	제20조의2(가정용부탄 등에 대한
별소비세 환급 특례) ①액화석	개별소비세 환급 특례) ①
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	
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	
4호바목의 물품(이하 이 조에서	
"가정용부탄"이라 한다)을 판매	
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	
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	
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	
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	
계산된 개별소비세액(이하 이	
조에서 <u>"환급세액"</u> 이라 한다)을	<u>"가정용부탄 환급세액"</u>

환급하거나,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

<u>환급세액</u> =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× (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- 같은 호 마목의 세액)

<신 설>

③ <u>제1항</u>에 따라 환급 또는 공 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<u>가정</u> _____

<u>가정용부탄 환급세액</u> = 가정용부탄 으로 판매한 수량 × (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세액 - 같은 호 마목의 세액)

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 (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)하는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물품(이하 이 조에서 "수소제조용부탄"이라 한다)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"이라 한다)을 환급하거나,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

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= 수소 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× (제1조 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- 같은 호 마목의 세액)

- ③ <u>제1항 또는 제2항</u>-----
- ----- <u>가정</u>

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<u>환</u>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(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: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 금액
- 2.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: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

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
<u>가</u>
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
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
(이하 이 조에서 "환급세액"이
라 한다)
4
1. 제1항 또는 제2항
0 레1된 # 및 레0된
2. 제1항 또는 제2항
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	⑥ 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</u>
<u>지</u> 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	
의 절차, 제출 서류, 세액 징수	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O 수입 : △28억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연 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			해	당	없	유		
지출								
	소 계(A)							
	수소제조용 LPG부탄에							
	대한 환급특례 신설	△18	△10	-	-	-	△28	△5.6
	(§20의2)							
수입								
	소 계(B)	△18	△10	-	-	-	△28	△5.6
총비	용(A-B)	18	10	0	0	0	28	5.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제20조의2(가정용	
1	부탄에 대한	부탄을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LPG 부탄에 대한 세액과 LPG
1	개별소비세	프로판에 대한 세액간 차액을 환급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
	환급 특례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20조의2(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)	여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'24.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O 수소제조용 LPG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(§20의2)
- 세수감 : △**28**원
- '23년 수소제조용 LPG부탄 소비량(약 14,000톤) 등을 감안하여 세수 효과 산정

IV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국장
강희중	이정아	김정주	이용주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아	044-215-4331	ja9595@korea.kr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사항 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<항목별 재원조달방안>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XX	20XX	20XX	20XX	20XX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						
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기존 예산·기금의						
항목 간 조정						
○기타						
<합 계>						

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사항 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<부문별 재원조달방안>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XX	20XX	20XX	20XX	20XX	합 계
□ 중앙정부						
ㅇ 일반회계						
ㅇ ○○특별회계						
ㅇ ㅇㅇ기금						
□ 지방자치단체						
ㅇ 일반회계						
ㅇ ○○특별회계						
ㅇ ○○기금						
□ 기타						
Ó						
< 합 계 >						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사항 없음			

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사항 없음			

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사항 없음			

Ⅳ. 부대의견

O 해당사항 없음		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		해당사항 없음

Ⅵ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국장
강희중	이정아	김정주	이용주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아	044-215-4331	ja9595@korea.kr